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10호로 2024년 10월 14일 신홍식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의장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공무원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저임금의 악순환과 악성민원의 심각성, 변화하는 직업가치관 등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최근 MZ세대 공무원들의 출사포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방안이 아닌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일수 확대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파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한 때로 판단됨.

- 본 안건을 통해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의 주요 내용은 ▲
특별휴가 부여일수1) 5일→10일 확대 ▲남성공무원 임신
 검진동행휴가2) 10일 휴가 부여 ▲정·난관 복원 수술3)
 3일 휴가 부여로 볼 수 있음.

1)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 특별휴가 부여 일수 현황

5일 이내 부여 (12개 자치단체)	10일 이내 부여 (12개 자치단체)	기타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동작구 (8일 이내)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남성공무원(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주요내용
1	남 원 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2	남 원 시 의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3	부 영 산 광 역 시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4	서 울 특 별 시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5	서 울 특 별 시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6	안 성 시 의 회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3일
7	안 양 시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8	안 양 시 의 회	남성공무원 임신검진동행휴가 10일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정·난관복원수술 휴가 부여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주요내용
1	강 령 시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2	강 령 시 의 회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3	철 원 군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4	철 원 군 의 회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에 한정하여 임신 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을 위해 병원에 동행할 시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난관 복원 수술 3일 휴가 신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결과적으로, 특별휴가의 부여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본 일부개정의 신설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아울러 출산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휴가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봄. 다만 대직하는 직원에게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특별휴가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